

 POSRI 보고서

한-터키 FTA, 경제적·지리적 이점 보고 활용해야

유승록 수석연구원, 철강전략연구센터 (srryu@posri.re.kr)

[목 차]

1. 한-터키 FTA의 주요 내용
2. 철강분야의 주요 협정 내용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Executive Summary

○ 한-터키 FTA가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음. 그러나 FTA에 의한 철강제품의 무역확대 효과는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는 ▶양국간의 낮은 무역의존도 ▶주력 철강 수출품에 대한 터키의 높은 수입관세와 관세인하 일정의 지연, 그리고 ▶유럽 등 경쟁국 대비 높은 운송비 부담 등이 존재하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금번 FTA로 중국과 일본산 HR, 중국산 CR의 일부가 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단 지연된 관세인하 일정으로 단기간에 전환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 한-터키 FTA 협정내용 중 철강분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관세 인하) HS 72의 10자리 기준 총 564개 제품 중에서 59%인 333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약 40%인 224개 품목은 협정 발표 후 8년째부터 철폐하기로 규정. 그러나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HR, CR 및 도금강판의 대부분이 가장 늦은 8년째부터 철폐
- (원산지 규정) 한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HS Code 4자리 기준의 변형 조건을 관철하였으나, 열연제품에서 도금제품까지가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열연제품을 수입하여 냉연 혹은 도금 제품으로 가공하여 터키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함
- (무역 규제)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특히 세이프가드의 조사 및 발동 전에 당국간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으며, 발동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무역환경 조성

○ 한-터키 FTA가 단기간 내에 양국간의 교역을 증대시키기는 어렵고, 최근 터키내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 그러나 ‘유라시아의 떠오르는 호랑이’ 터키의 잠재력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장기적인 시장잠재력 활용) 인구 8,069만 명(세계 17위), 높은 경제성장률, 1인당 철강소비량 322.8kg 등 시장 규모와 성장성 면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 활용)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도와 16개국과 체결한 다양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 및 진출 기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함

1. 한-터키 FTA의 주요 내용

- 5월 1일부로 발효된 한-터키 FTA는 한국으로서는 8번째, 터키로서는 17번째 FTA로 양국의 핵심무역정책으로 FTA가 정착
 - 양국간 교역은 2012년 52억 달러로 한국 총교역액의 0.5%, 터키 총교역액의 1.3%에 불과해 교역만을 놓고 보면 양국은 상호간에 무역파트너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
 - 그러나 터키는 시장잠재력이 크고, 지리적 전략적 중요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 피해가능성이 작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FTA 상대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한-터키 FTA는 추진 동기와 협정의 범위에서 한국이 체결한 타 FTA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터키와 EU간에 체결한 관세동맹협정에 따르면,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터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한-터키 FTA는 이 의무조항의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터키·EU 관세동맹의 제 16조에는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터키도 동 제3국과 FTA를 체결하도록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 한-터키 FTA는 한-ASEAN FTA와 마찬가지로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을 우선 발효하고, 서비스 및 투자협정은 2013년 5월 1일 이후 협상을 개시하여 1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
 - 터키는 지금까지 16개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모두 상품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터키로서는 한·터키 FTA가 서비스시장 및 투자 자유화까지 염두에 둔 최초의 FTA
- 한-터키 FTA에서 양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농수산물은 양국이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 한국이 맺은 FTA 중에서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를 확보
 - (상품 양허) 한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99.6%, 터키는 100%를 10년 내 관세철폐(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 92.2%, 터키 89.8%)
 - 한국은 수입액의 92.9%, 터키는 53.8%를 즉시 개방하기로 하였고, 5년 내에 개방률은 한국 99.8%, 터키는 77.9%에 달함
 - 공산품은 양국 모두 7년에 걸쳐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전개방시기가 7년으로 타 품목에 비해 지연
 - (농산물)타 FTA에서 민감한 문제를 야기했던 농수산물 분야는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달성

-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의 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이 96.7%, 터키는 96.8%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 품목의 대부분을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 52.5%, 터키는 52.7%)
- (무역 구제)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조치 발동과 관련하여 절차적,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를 확보
 - 터키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세계 1위 국가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제 3위의 무역구제 조치 발동국
 - 2012년 3월까지 터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총 8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2. 철강분야의 주요 협정 내용

- 한국의 對터키 철강수출은 2012년 약 27만 톤으로 총수출의 0.9%에 불과하며, 수입량은 3천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
 - 철강 수출입 증가율도 2008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어 철강교역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 의존도는 매우 낮은 상황
 - FTA 효과가 일반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간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터키 FTA가 양국간의 철강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철강제품은 운송비가 높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가 운송비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무역창출효과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관세인하) 금번 FTA 협정에서 모든 철강제품 (HS Code 72, 73) 관세를 발효 후 7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주력제품 대부분이 가장 긴 7년 이후 철폐로 되어 있어 FTA 효과가 현실화되는 데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
 - 터키의 현 관세를 살펴보면 HS Code 4자리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이 최고 15%에 이르고, 주력품목인 열연과 냉연제품도 최고 13%, 10%로 높은 실정
 -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STS열연의 경우는 관세율이 최고 2%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한-터키 FTA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HS 72의 10자리 기준 총 564개 제품 중에서 59%인 333개 품목은 관세 즉각 철폐, 약 40%인 224개 품목은 협정 발효 후 8년째부터 철폐하기로 규정. 5년 후 철폐 품목은 7개
 - 그러나 열연, 냉연, 도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7년 이후부터 무세화

<표 1> 한국의 대터키 철강 수출 현황 및 터키의 관세 인하 계획

HS Code ¹⁾	2012 수출 실적		터키 관세 및 인하 계획	
	수출량(천톤)	비율(%)	현 관세율(%)	인하계획 ²⁾
7208(열연강판)	30	14.2	9~13	7
7209(냉연강판)	12	5.6	10	7
7210(도금강판)	97	45.8	0, 15	0, 7
7211(협폭대강)	0	0.2	0, 15	0, 7
7212(협폭도금)	1	0.5	0, 15	0, 7
7216(형강)	1	0.6	0~ 17	0, 5, 7
7217(선재)	9	4.3	0	0
7219(STS열연)	37	17.4	0, 2	0
7220(STS냉연)	2	1.0	0, 2	0
7223(STS선재)	1	0.4	0	0
7225(합금강판재)	20	9.6	0, 6	0
7229(합금강선재)	1	0.4	0	0
합계	213	100.0		

주1) HS Code 72번 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임

주2)인하계획에서 ‘0’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무관세 적용, ‘5’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 년차 1 월 1 일부터 무관세 적용, ‘7’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 년차 1 월 1 일부터 무관세 적용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한-터키 FTA 관세양허표

□ (원산지규정) 한-터키 FTA의 철강제품 원산지규정은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HS Code 호(4자리)의 변형 기준을 택함

○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채택되어 적용

- 예를 들면, 한국이 슬라브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열연제품으로 가공하여 터키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HS Code 4자리의 변형조건이 충족되어 한국산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부여 받음
- 그러나 열연제품(HS 7208)을 중국이나 일본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냉연(HS 7209) 혹은 도금강판(HS 7210) 으로 가공, 수출하는 경우에는 HS code 4자리 수준에서의 제품 변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터키 FTA에서는 7208~7216 제품의 경우 7206, 7207로부터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국내에서 열연강판을 수입하여 냉연 및 도금강판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일부 철강업체의 경우에는 한-터키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 받기 어려운 실정

<표 2> 한-터키 FTA의 철강제품 원산지 규정

HS Code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7207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반제품	7201, 7202, 7203, 7204, 7205 또는 7206호의 재료로부터 생산
7208~7216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7206, 7207호의 잉곳 또는 다른 일차형상,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7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선	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8.91 및 7218.99	반제품	7201, 7202, 7203, 7204, 7205 또는 7218.10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9~7222	스테인리스 강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7218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재료로부터의 생산
7223	스테인리스 강의 선	7218호의 반제품재료로부터의 생산
7224.90	반제품	7201, 7202, 7203, 7204, 7205 또는 7224.10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225~7228	비규칙적으로 감긴 고리형태의 평판압제품, 열압 바 및 대, 기타 합금강철의 봉, 형재 및 조각, 강철의 합금 또는 비합금 공동 드리 바 및 대	7206, 7207, 7216 또는 7224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의 생산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224호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참고] FTA와 원산지규정

- FTA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규정이 필요한데, 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회원국으로 재수출하는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과 물리적인 실질적 변형기준이 대체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물리적인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수입 소재로부터 HS Code 2자리 혹은 4자리 수준에서 코드가 변경되었는가의 여부로 판단

□ (무역구제) 한-터키 FTA에서는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일국이 일방적으로 동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터키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세계 1위 국가이며, 최근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총 8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는 측면에서 무역구제 조항의 명확화는 對터키 수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
 - 양국은 경쟁적인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 정지 등과 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조사 개시의 서면 통보,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이전 당사국간 협의, 동일한 상품에 대한 1회 초과 금지 등의 조건과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동조치의 투명성을 확보
- 최근 전세계적으로 철강무역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은 양국간에 철강교역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기대효과) 현재 한국과 터키간의 철강 교역규모와 교역품목, 그리고 관세인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터키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철강교역의 증대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 냉연강판 및 아연도 강판의 관세율이 높고, 관세인하 일정도 장기화되어 있어 FTA로 인한 양국간 철강무역 창출효과는 예상보다 지연되어 나타날 가능성
 - 무역창출 효과는 FTA 전의 고관세 정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던 제품이 FTA로 관세가 인하 혹은 철폐됨으로써 국내 생산이 회원국 수입으로 전환되는 효과
 - 터키의 철강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영향으로 일부 철강재는 한국에 비해 고비용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운송비와 상대적으로 연장된 관세인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역창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FTA 발효 8년 차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현지의 한국산 철강재 수입업체는 관세율 인하 폭 만큼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 효과를 단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임
- 무역전환효과 또한 주력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을 고려할 때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전환효과는 FTA 체결로 이전에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제품이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효과
- 2012년 기준으로 터키의 철강수입 약 11백만 톤 중 한국의 비중은 2% 중국 2%, 일본은 5%에 불과하고 EU 46%, 구 CIS는 45%를 점유
- 일본의 터키 수출은 주로 HR(92%)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HR과 CR이 각각 16%, 한국은 아연도강판 46%, HR 19%, CR 2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한-터키 FTA로 중국과 일본산 HR과 중국산 CR이 일부 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관세인하일정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전환되는 물량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활용방안) 무역 창출 및 전환 효과에 의한 한국의 對터키 철강수출증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터키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전망

- (장기적인 시장잠재력 활용) 터키는 인구 8,069만 명(세계 17위), 유럽 재정위기에도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10년 9.2%, '11년 8.5%, '12년 3.3%), 1인당 철강소비량 322.8kg 불과 등 시장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잠재력이 매우 큰 유라시아의 떠오르는 호랑이
 - 따라서 FTA의 단기적인 무역증대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 활용)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도와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 발굴
 - 터키는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로서 이들 시장으로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
 - 현재 터키가 타국과 체결하고 있는 16개 FTA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그리고 향후 1년 내에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까지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므로 수출 확대 및 진출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

[참고 자료]

[공개자료]

기획재정부, 터키 경제의 중요성과 협력 방향, 보도참고자료, 2012.2.3

김재우 외,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 방안', Global Market Report 13-037, KOTRA, 2013.5.1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FTA 터키측 양허표, 2013..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FTA 한국측 양허표, 2013..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2013..

성한경, 한-터키FTA 추진 필요성과 분야별 고려사항, KIEP, 2010.2

[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Data Base

한국철강협회, 수출입 Data Base

ISSB, World Steel Exporter, 각년호.

[학술자료]

김영귀 외, 『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KIEP, 2013.3.

손병해, 『국제경제통합론』, 시그마프레스, 2011.8.

정철 외,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 방안』, KIEP, 2010.